



즉시 배포용: 10/29/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 **CUOMO** 주지사, 수퍼폭풍 **SANDY**의 영향을 입은 주택소유주들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수퍼폭풍 **Sandy**와 극한 날씨에 관련된 법안 두 건에 서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하수 문제와 침수 관련 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뉴욕주의 보험 산업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Sandy** 후에 집을 수리한 뉴욕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허리케인 **Sandy** 후 3년 동안 우리는 증가하는 극한 날씨의 위협에 직면하여 뉴욕주를 더 스마트하고 더 튼튼하며 탄력적이 되는 방식으로 계속 재건해 왔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두 법안은 당한 피해로부터 재건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을 뒷받침하고 보험회사가 영향을 입은 가입자를 뒷받침하도록 함으로써 바로 그러한 것을 합니다.”

**Cuomo** 지사가 서명한 첫 번째 법안 **A. 453 / S. 1454**는 하수도 백업을 위한 주택소유주 보험 보장 관련 “반동시 인과관계”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제외되는 위험(예: 침수)이 손해 또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야기할 때마다 보장되는 위험이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손해 또는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보장을 거부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습니다.

수퍼폭풍 **Sandy** 후에 많은 주택소유주의 하수도 백업 청구가 반동시 인과관계 조항을 이용하는 보험회사들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시스템이 폭풍 도착 전에 막혀 하수도 백업이 발생한 때에도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인이 손해 또는 피해를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침수도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하수도 백업에 의해 야기된 손해 또는 피해를 침수에 의해 야기된 손해 또는 피해로부터 구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새 법률은 금융서비스부가 하수도 백업에 대한 주택소유주의 보험 보장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이 조항의 처리와 관련한 권고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DFS** 부장은 또한 **2017년 1월 1일까지** 주지사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 1454**를 발의한 **Martin Golden**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수도 백업 보험이 매우 비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 수퍼폭풍 Sandy 기일에 즈음하여 본인은 손해를 겪을 때 더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보험 청구를 제기할 기회를 정당하게 제공할 이 법안에 서명하신 Andrew Cuomo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뉴욕주민들이 그러한 사건의 경우에 견디는 재정적 손해의 일부를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변경하였습니다.”

**A. 453을 발의한 Steven Cymbrowitz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큰 폭풍이 뉴욕주를 강타하는 것이 새로운 정상이 됨에 따라 보험도 주택소유주의 니즈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진화해야 합니다. 허리케인 Sandy 후에 보험회사들이 바깥 폭풍과 내부 하수도 백업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손해 보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보험회사에 동시 피해가 발생할 때 보장을 제공하도록 적절히 지시하고 그리고 향후에 보장 거부를 방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Cuomo 지사는 또한 Nassau 카운티가 사정 증가의 비용을 완화할 세금 경감을 채택하는 것을 승인할 A.7156 / S.5800에도 서명하였습니다.

수퍼폭풍 Sandy의 여파로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 집을 광범위하게 수리하거나 재건하였습니다. 주택소유주가 폭풍 전에 존재하였던 상태로 건물을 복원한 경우에도 이러한 수리의 결과로 주택소유주들 중 다수를 위한 평가액이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새 법률은 폭풍에 귀속시킬 수 있는 평가액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한 세금 경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는 현지 과세 평가인이 과세 평가액을 결정할 때 폭풍 관련 건축을 고려하는 것이 금지될 것입니다. 법안은 즉각 발효될 것입니다.

**S. 5800을 발의한 Michael Venditto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수퍼폭풍 Sandy 피해자들을 지원하여 그들이 수리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할 이 법안의 상원 발의자여서 자랑스럽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Kaminsky 하원의원과 본인은 양당적으로 협력하여 양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선거구민 모두를 대표하여 본인은 이 법안에 서명하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A. 7156을 발의한 Todd Kaminsky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심한 손상 후에 집을 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수퍼폭풍 Sandy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세금 경감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역사상 최악의 자연 재난 중 하나 후에 주민들은 수퍼폭풍 Sandy 후 집을 수리한 직접적 결과로 더 높은 세금 고지서로 두드러 맞아서 안 됩니다. 이제 3년이 지났는데도 가족들이 계속 고전하는 것은 부당할 뿐입니다. 이 법률은 Nassau 카운티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구제를 제공할 것이며 본인은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